

투자신탁 신탁약관 및 설명서 변경

1. 투자신탁의 명칭

신한 BNPP 스마트 코스피 200 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 1 호

2. 투자신탁의 개요

펀드명	설정일	순자산 (2008.06.16기준)
신한 BNPP 스마트 코스피 200 인덱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 1 호	2007.06.13	2,890,639,589 원

3. 신탁약관 변경 시행일 : 2008. 07. [14]

4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:

- 변경사유 : 동일 투자신탁 내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클래스(종류)와의 환매수수료 차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혼동하여 민원이 발생하기에 해당 클래스(온라인 전용판매종류인 A-e)의 선취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조정하여 타 클래스(종류)와 동일한 환매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함.

아래 약관 내용을 설명서에 반영함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제 20-2 조 (선취판매수수료)	① ~ ⑤ (생략) ⑥ 종류 A-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)의 100 분의 0.45 를 초과한다.	① ~ ⑤ (생략) ⑥ 종류 A-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)의 <u>100 분의 0.50</u> 을 초과한다.
제 23 조 (환매수수료)	① (생략) ② (생략) 1. 종류 A1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음 2. 종류 A2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음 3. 종류 A3 수익증권: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% 4. 종류 A-S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음	① (생략) ② (생략) 1. 종류 A1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음 2. 종류 A2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음 3. 종류 A3 수익증권: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% 4. 종류 A-S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음

	<p>5. 종류 A-e 수익증권: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%</p> <p>③ (생략)</p>	<p>5. <u>종류 A-e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음</u></p> <p>③ (생략)</p>
<p>제 40 조 (투자신탁보수)</p>	<p>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~4. (생략)</p> <p>5. 종류 A-e 수익증권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[3.0] 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[1.5] 3. 수탁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[0.30]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[0.15]</p>	<p>① ~ ② (생략) ③ (생략) 1.~4. (생략)</p> <p>5. 종류 A-e 수익증권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[3.0] 2. <u>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[1.0]</u> 3. 수탁회사보수율: 연 1,000 분의 [0.30]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[0.15]</p>
부칙 (변경)	<신설>	<p>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7월 [14]일부터 시행·적용한다.</p>